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729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redacted]공사
피고, 항소인	1.[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3.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4.[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5.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3118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5. 7.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3. 9. 10. 한 재산세 1,005,114,970원의 부과처분 중 933,651,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3. 9. 10. 한 재산세 85,215,450원의 부과처분 중 79,156,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3. 9. 10. 한 재산세 27,750,800원의 부과처분 중 25,777,72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3. 9. 10. 한 재산세 4,560,490원의 부과처분 중 4,236,24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3. 9. 10. 한 재산세 2,910,210원의 부과처분 중 2,703,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광주광역시 0.33%, 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 등 합계 9.48%) 등이다.

나.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세 감면조례(2012. 4. 5.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조례 제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세 감면조례(2012. 6. 28.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조례 제1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구세 감면조례(2012. 2. 20.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조례 제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세 감면 조례(2012. 2. 29.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조례 제1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은 구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세 감면 조례(2012. 2. 17.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조례 제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5개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2.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하고 위 조항을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3. 9. 10. 각 관할구역 소재 각 토지에 대하여 감면 없이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피고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광역시 [redacted]구청장 부과세액 1,005,114,970원,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부과세액 85,215,450원,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부과세액 27,750,800원,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부과세액 4,560,490원,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부과세액 2,910,210원. 각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포함된 세액이고,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4. 3. 1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1, 4호증, 을다 제1, 3호증, 을라 제1, 3, 4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의 설립등기 당시부터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련부처의 협의가 지체되어 납입이 지연된 것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문언은 반드시 설립시의 최초 자본금 납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1986년 말 설립목적인 천연가스공급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등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위 문언을 당해 법인 설립등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최초 자본금을 납입한 경우로 해석한 것은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부당한 축소해석이고, ②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에 따라 원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따른 주식회사'라는 문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에 근거하여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고, ③ 입법자의 의도는 지방세 감면대상은 유지하되 감면비율만 축소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처분금액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감면비율인 100분의 75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인 9.48%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형식 및 내용과 그 신설 배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란 그 명문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외에 설립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과 무관하게 그 시기를 불문하고 증자에 참여한 모든 법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한 법인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이 사건 조례를 통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여 감면되어 왔는데, 위와 같은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일부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 지방세제한특례법이 2011. 12. 31. 개정되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신설되어 지방공기업 등에 관한 지방세 감면이 법정화되는 한편, 이 사건 조례는 모두 폐지되었다.

② 위와 같이 개정된 구 지방세제한특례법 제85조의2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각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감면조항인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조례와 이 사건 감면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으로 규정한 데 비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될 여지가 없어졌고, 감면 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외에도 '설립'이라는 명문이 추가되는 등 그 감면대상에 관한 문언이 상이하다.

④ 한편, 개정 입법자료(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의 신설 배경으로서 국세의 경우 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이 없음에도 지방공기업 등이 지방세 감면을 당연시 여겨 사업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국가공기업까지도 지방세 감면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이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할 필요성의 논거로 제시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⑤ 이 사건 감면조항과 이 사건 조례의 문언, 이 사건 조항의 신설 배경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 취지는 종전 이 사건 조례를 통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아 온 지방공기업 등의 감면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기관 별로 감면비율도 축소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감면 비율을 축소하는 외에 감면대상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정부는 국가기반사업인 가스공급을 위해 1980년 무렵부터 경제장관협의회를 통해 가스도입사업의 기본방침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1982. 12. 31. 구 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되었다.

② 원고는 1983. 8. 18. 정부(출자금 8,000,000,000원, 지분율 61.2%)와 한국전력공사(출자금 5,072,000,000원, 지분율 38.8%)의 출자로 설립된 이래 수년간에 걸쳐 자본금을 확충하면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점진적으로 구축하였고, 1987. 2. 무렵 수도권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한 이래 전국적인 가스 공급망을 갖추고 천연가스의 제조·공급과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담당하여 왔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3. 8. 18. 설립등기가 마쳐졌지만 피고들의 출자를 받기 전까지는 구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 제1항의 자본금 2천억 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 원고가 설립 중인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1983. 5. 28. 대통령령 제1113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와 제4조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자본금 2천억 원은 최대 자본금을 의미하고, 법정 설립 자본금은 20억 원 이상(설립 시 발행하는 주시의 총수 20만 주 × 1주의 금액 1만 원)이면 충분하는 것으로, 설립등기 당시에는 이미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액(130억 7,200만 원)만으로 위와 같은 법정 자본금을 충족한 상태였다].

③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1986년 무렵 서울특별시가 처음으로 원고가 발행한 400,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3.12%를 획득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가 설립될 당시에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아무런 출자가 없어 원고는 피고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판사 김용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1983.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되어 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출자는 현금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3. 5. 28. 대통령령 제11134호로 제정된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26

제3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공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이상으로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① 국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끝.